

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옥규의원 등 8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1년 4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○ 「주거기본법」 제정(시행 2015.12.23.)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(안 제3조)

○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, 시행 (안 제4조)

○ 주거실태 조사 (안 제5조)

○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·기능·구성 등 (안 제6조~제12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저출산,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 수립,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주거 정책과 도의 주요 정책을 연계하도록 하였으며
- 안 제6조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택지개발 지구 지정·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주거복지나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음.
- 이 조례안 저소득층, 청년계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. 끝.